

행 정 자 치 부

훈 계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없이 승진예정기준 마련·운영 부적정 등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오산시

관련 대상자 오산시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4. 2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오산시 ○○○
○○ 근무하면서 인사업무 관련 실무담당자이다.

1.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없이 승진예정기준 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
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오산시에서는 2015. 7. 3.(○○○○○-○○○○○) 명예퇴직 및 정원 증원
등 승진요인 발생에 따른 승진후보자 직렬결정(안)을 마련하여 시장 결재를 득
한 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과정 없이 승진예정 기준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2015. 7. 28.(○○○○○-○○○○○) 경기도 인사교류로 5급 결원에
따른 승진후보자 직렬결정(안)을 마련하여 시장 결재를 득한 후 승진예정 기준
에 대해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과정 없이 승진예정기준을 결정·운영하였다.

2. 해당 직위에 불부합한 인사발령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며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시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조 등에 따르면 ○○○○○ ○○○○은 지방○○○○○ 또는 지방○○○○○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산시에서는 2015. 7. 13.자로 승진한 지방○○○○○ ○○○을 관련 규정상 맞지 않는 ○○○○○ ○○○○으로 발령조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오산시장은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